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54호
2019. 8. 16.(금)

차 례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19-100호)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101호)2

공 고(7)

-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공고 제2019-717호) ..3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720호)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721호)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722호)10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726호)1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727호)14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9-728호)16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724호)17

공 람									
--------	--	--	--	--	--	--	--	--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445	318202.90	238160.23	318220.27	238159.46	재설치
도근점	"	418508.44	238230.35	418507.480	238230.976	세계측지계 재관측
도근점	2363	318031.58	237961.76	318030.84	237963.10	재설치
도근점	"	418338.79	238033.34	418284.261	238033.193	세계측지계 재관측
도근점	2353	317977.16	237963.87	317977.09	237961.62	재설치
도근점	"	418284.38	238035.49	418338.047	238034.701	세계측지계 재관측
도근점	2352	317921.49	237966.95	317942.89	237964.70	재설치
도근점	"	418228.69	238038.58	418232.067	238036.295	세계측지계 재관측
도근점	2346	317734.10	237973.07	317735.26	237970.98	재설치
도근점		418044.43	238041.23	418042.370	238042.661	세계측지계 재관측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03-2번지 외				
측 량 년 월 일		2019년 8월 9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표지재질(철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신탄진동 139-3	신탄진로810번길 60	2019. 8. 16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8,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417-34	석봉로37번길 34	2019. 8. 16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64-4	덕암로173번길 1	2019. 8. 16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7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1.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산12-2번지 일원에 군수품의 신뢰성 시험 업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국방신뢰성시험센터 신축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2.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대덕구청(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산1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 2) 명칭 :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신축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국방기술품질원
-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면적 : 21필지 94,595㎡

2) 규모

·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 계획 (㎡)	용도별 면적	건축부지		도로 및 주차장		체육시설		광장부지		조경부지		자연녹지		합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029.25	3,029.25	6,279.96	7,037.82	743.80	743.80	1,961.22	2,165.32	9,518.09	12,973.32	73,062.68	70,867.78	94,595.00	94,595.00

· 건축물 건축

구분	면적(㎡)				용도		
	주시설(연구시설)		부대시설			소 계	
	당 초		당 초			당 초	
합 계	5,812.12		4,322.55		10,134.67		
연구동	3,444.54		2,227.91		5,672.45		교육연구시설
시험1동	1,562.67		1,561.45		3,124.12		교육연구시설
시험2동	804.91		409.24		1,214.15		교육연구시설
경비실			123.95		123.95		교육연구시설
건폐율	3.20%						
용적률	7.92%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7,489.86㎡)				
주차대수	102대		(법정주차대수 (44대), 200㎡ 당 1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2016. 11. 10. ~ 2019. 12. 31.

- 변경 : 2016. 11. 10. ~ 2020. 06. 30.

바. 열람 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열람 장소 : 대덕구청 도시재생과(☎ 042-608-510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불임참조

자.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차.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비고
1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12-4	임	5,716	5,716	국방기술품질원	
2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12-2	임	14,768	14,768	국방기술품질원	
3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12-3	임	1,208	1,208	국방기술품질원	
4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63	답	1,104	1,104	국방기술품질원	
5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64	전	562	562	국방기술품질원	
6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64-1	전	2,370	2,370	국방기술품질원	
7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64-2	전	1,537	1,537	국방기술품질원	
8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64-4	전	526	526	국방기술품질원	
9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64-5	전	1,187	1,187	국방기술품질원	
10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산61-4	임	12,196	12,196	국방기술품질원	
11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산61-10	임	40,985	40,985	국방기술품질원	
12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산61-11	임	259	259	국방기술품질원	
13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214	답	483	483	국방기술품질원	
14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215	답	1,643	1,643	국방기술품질원	
15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216-1	답	519	519	국방기술품질원	
16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216-2	전	390	390	국방기술품질원	
17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216-3	대	1,660	1,660	국방기술품질원	
18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217	전	3,924	3,924	국방기술품질원	
19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218	답	1,158	1,158	국방기술품질원	
20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219	전	550	550	국방기술품질원	
21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221	답	1,850	1,850	국방기술품질원	
면 적 합 계			94,595	94,595		

※ 상기 편입 토지상 지장물건 포함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청로526 번길 포함 2 개소	LPG관로 매설	미호동 200-7 번지 포함 21 개소 (24통)	63	아스콘	355.0	'19.8. ~ '1 9.10. (착공일로부터 60일)	355.0 (착공일로 부터60일)	23.1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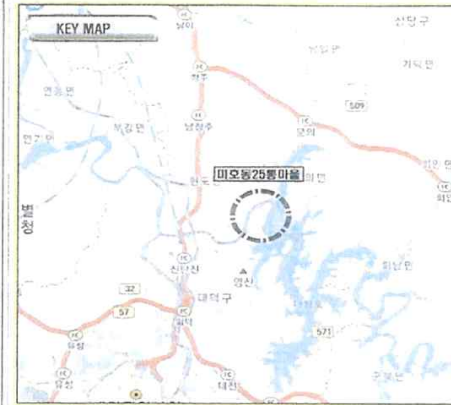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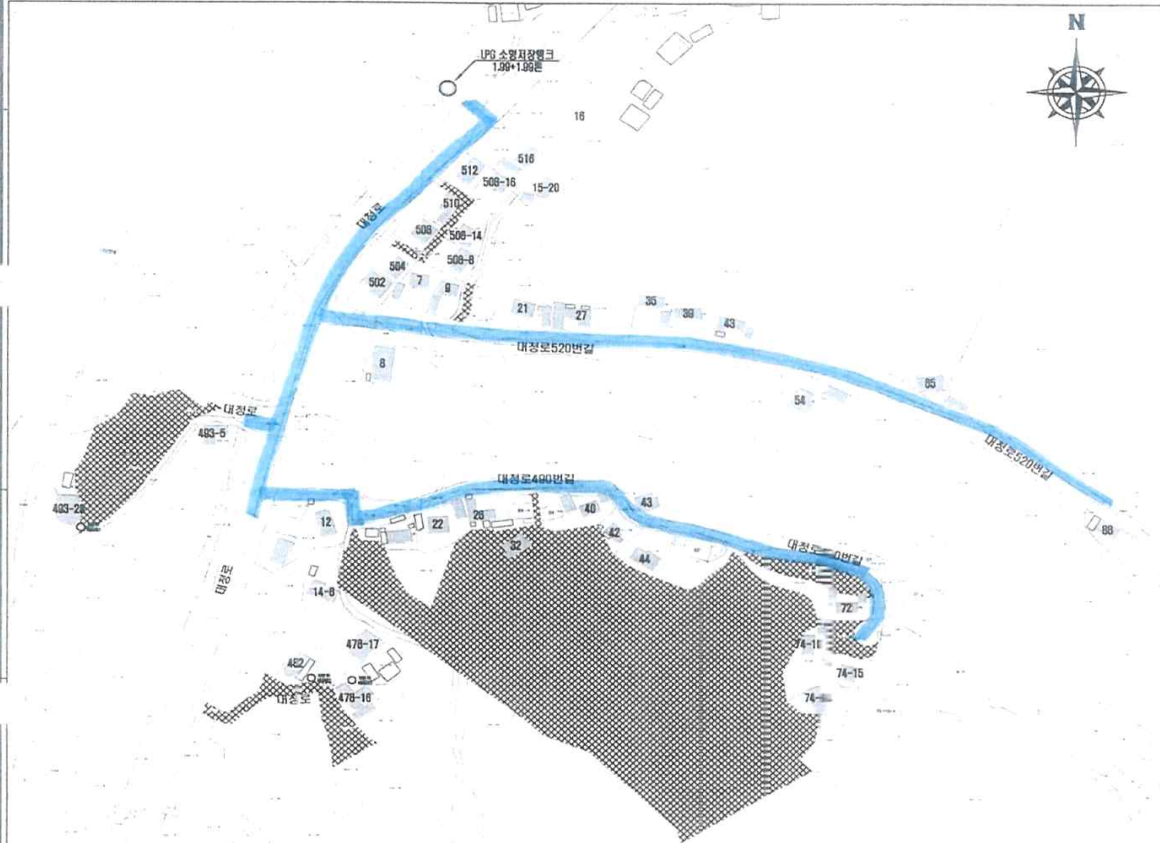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m ²)	영구점용(m ²)
1	대청로520번길 포함 3개소	LPG관로 매설	미호동 732번지 포함 27개소 (25통)	63	아스콘	1,564.0	'19.8. ~ '19.10. (착공일로부터 60일)	1,564.0 (착공일로부터 60일)	101.7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위치도(평면도)

미호동25통마을 공급시설 전체배치도
S=1:2,400



법례

구분	명칭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특설 배관)
	사용지구간

지장시설

종목	규격	단위	수량
PIPE	공급시설	KS M 3514, 63mm	km 1.50
	사용시설	KS M 3514, 90mm	km -
	사용시설	KS M 3514, 63mm	km 0.49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청로424번길 포함 3개소	LPG관로 매설	삼정동 33-4번지 포함 12개소 (22통)	63	아스콘	407.0	'19.8. ~ '19.10. (착공일로부터 60일)	407.0 (착공일로부터 60일)	26.5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위치도(평면도)

삼정동22동마을 공급시설 전체배치도
S=1:2,000



범례

구분	명칭
	급탕구간
	사무지구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신탄진로 1 62번길	도시가스관 매설	연축동 199~ 129 번지 일원	63~315	아스팔트	400	'19.8. ~ '1 9.9. (착공일로부터 20일)	511.2 (착공일로 부터20일)	97.41 (허가일로 부터10년)
				63	콘크리트	26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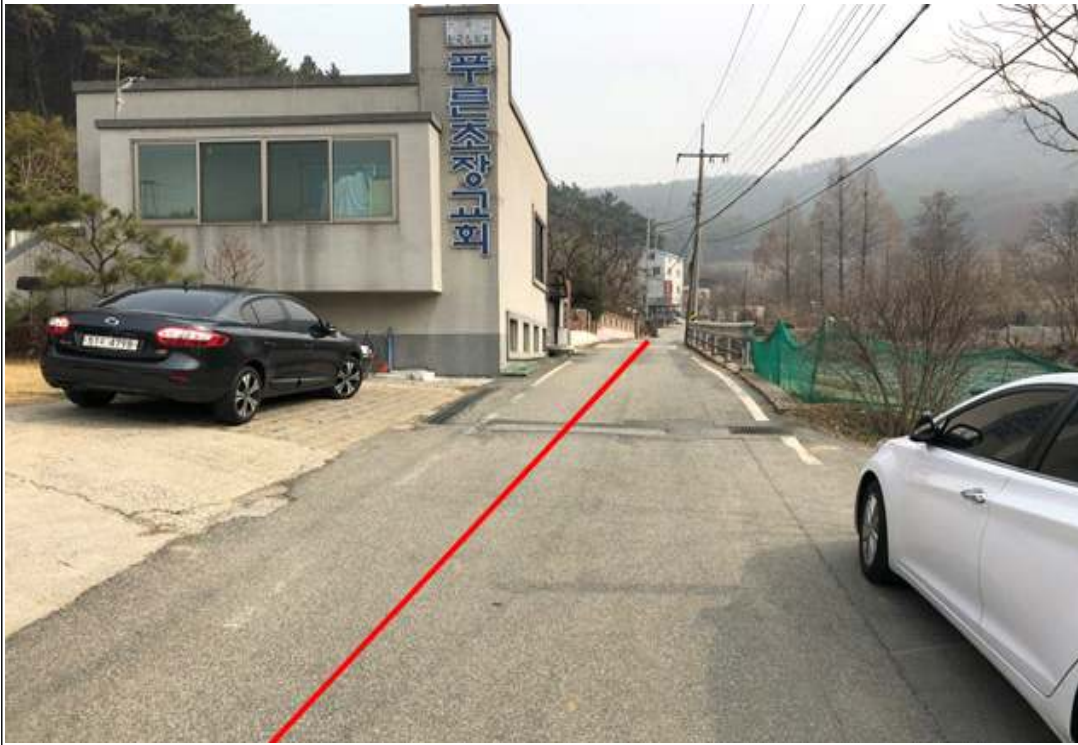
위치도 및 사진대지

골차	연축동 199~129번지 일원
위치	

위 치 도



사 진 대 지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신탄진로 162번길	도시가스관 매설	연축동 199~129번지 일원	63~160	아스팔트	224	'19.8. ~ '19.9. (작공일로 부터 20일)	304.8 (작공일로 부터 20일)	39.38 (허가일로부터10년)
				63	소형고압	3			
				160	비포장	27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위치도 및 사진대지

골차	연축동 129~17번지 일원
위치	

위 치 도



사 진 대 지



대전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174-2번지 상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대동 174-2	5.7㎡	0.8m	12.7m	신순분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 - 72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및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복지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4항, 안 제7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복지위원관련 규정을 변경 및 삭제 함.

나.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9.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복지정책과(전화 : 042-608-6762, FAX : 042-608-3832, E-mail : marm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윤희
(전화 : 042-608-67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제44조”를 “제41조”로, “제7조 및 제9조”를 “제7조”
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위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3
항·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u>제41조</u> 및 <u>제44조</u>, 같은 법 시행규칙 <u>제5조</u>부터 <u>제7조</u> 및 <u>제9조</u>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u>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위원</u>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복지위원</u>”이란 <u>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u>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제41조</u> ----- ----- <u>제7조</u>----- ----- <u>지</u> <u>역사회보장협의체</u>----- ----- ----- ----- -----</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제7조(복지위원) 복지위원의 위촉 절차, 임기, 인원, 직무 등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해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

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제44조 삭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

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